

#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1. 개정이유

경찰·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의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한 긴급자동차에 대한 전용 기호(앞자리 998, 999, 보통등록번호판)를 부여하도록 규정을 개정·시행하고 있으나, 소방 필수장비임에도 대형 차종을 사용 중인 물탱크소방차는 긴급자동차 전용기호를 사용하는 보통등록번호판 부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화재 발생시 아파트 등 소방 대상물 출입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이에 물탱크소방차 등 대형 긴급자동차에 대해서도 보통등록번호판 규격을 적용하여 긴급자동차 전용 기호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긴급자동차 중 물탱크소방차도 보통등록번호판 규격 적용

- 대형등록번호판 부착 대상인 물탱크소방차도 보통등록번호판 규격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조제2항제1호)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소방청 등과 합의함

라.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 - 89호

##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첨단안전장치”를 “긴급자동차인 경우에는 보통등록번호판 규격을 적용할 수 있으며, 첨단안전장치”로 한다.

###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2조(번호판의 재질 및 규격) ①<br>(생략)                                                                                                                       | 제2조(번호판의 재질 및 규격) ①<br>(현행과 같음)                                                                      |
| ② 번호판에는 관할관청, 용도, 차종 및 일련번호를 표시하고 그 규격과 문자의 배열, 글자체 등은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별표 제1, 2, 2-1, 2-2, 3, 4, 5, 6, 7, 8, 13, 14, 15, 18과 같이 하되 아래와 같이 예외를 둘 수 있다. | ② -----<br>-----<br>-----<br>-----<br>-----<br>-----<br>-----.                                       |
| 1. 대형등록번호판 규격을 부착하여야 하는 자동차 중 <u>첨단안전장치</u> 등과 앞쪽 번호판의 간섭으로 대형등록번호판 부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앞쪽 번호판에 한하여 보통등록번호판 규격을 적용할 수 있다.                          | 1. -----<br>----- <u>긴급자동차인 경우에는 보통등록번호판 규격을 적용할 수 있으며, 첨단안전장치</u> -----<br>-----<br>-----<br>-----. |
| 2. (생략)                                                                                                                                           | 2. (현행과 같음)                                                                                          |
| ③ ~ ⑤ (생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